

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9. 3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9. 3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10. 8) 상정

○ 제7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12. 22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복지과장 남평우)

가. 제안이유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책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며,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(안 제2조)
 ○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, 사회복지 관련 시의원, 기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20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함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위원회 구성 인원 중 부위원장이 3명인데 3명 이 필요한가?	○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3명이 필요함.

- 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위원장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의 당위성은?

 ○ 제3조3항3호의 의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는가? ○ 2명이 대변이 가능한가? ○ 제7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들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 등이 실효성이 없으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음. 꼭 필요한가? ○ 제3조3항1호와 4호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? ○ 경실련이 사회복지기능 담당이 가능한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업무의 범위가 넓고 예산수반 등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 당연직을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나, 당초안을 다시 검토해 보니 당연직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 ○ 내부적으로 2명으로 정함.

 ○ 3명 정도 해도 가능함. ○ 안 작성시 순천시와 다른 시·군을 참고해서 급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아동보육위원회 등이 있으니 이중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○ 1호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교수이며, 4호는 경실련단체임. ○ 구성분야에 복지관련 분야만 넣으면 형평성이 없으므로 시민 대표도 포함했음. |
|--|---|

4. 토론판정 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의안번호	관련 제245호
의결년월일	99. 12. 27 (제75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22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완비한 조례를 만들고자 관내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에 참고하였음.
- 현재 부천시에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고,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따라 복지관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기능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, 조정, 건의를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,
-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 바, 3인으로 구성하려는 안을 1인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선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위원회 운영상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며 이것에 대하여는 발의자의 삭제요구가 있었음.
- 위원수 구성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나 분과위원회가 없어지고 또 21명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위원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한정하였음.

 주요골자

- 위원회 기능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, 조정, 건의 추가(안 제2조)
- 부위원장은 3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, 위원수를 20인 내외에서 20인 이내로 조정(안 제3조)
-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당연직을 삭제하고, 위원 중에서 호선(안 제3조)
-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(안 제7조)

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(기능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연구·조정·건의

제3조(구성)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를 삭제한다.

제8조부터 제12조를 제7조부터 제11조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 1.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·조정·건의	제2조(기능) 1.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연구·조정·건의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20인 <u>내외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 2명</u> 을 위원장이 선임한다.	제3조(구성) ①..... 1인을 포함하여 20인 <u>이내의</u> ②.....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
제7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분과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,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·조정·건의한다.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.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되어 5인 내외로 구성한다. ⑤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.	제7조(분과위원회) <삭제>
제8조(간사 및 서기) 제9조(실비보상) 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제11조(회의록) 제12조(운영세칙)	제7조(간사 및 서기) 제8조(실비보상) 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제10조(회의록) 제11조(운영세칙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①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
2.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연구·조정·견의
3.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 중 2명을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
3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4.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과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8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

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